

營業祕密의 保護立法(1)



金 寬 衡
(本會 調查部長)

目 次

1. 概要
2. 類型
3. 外國制度
4. 우리나라 現況
5. 保護의 考察
6. 保護立法
7. 結語

〈고딕은 이번 號, 명조는 다음 號〉

1. 概要

(1) 意義

우리는 오늘의 經濟와 文化 그리고 科學技術의 발달에 따른 社會構造의 다양화 및 福祉文明의 급속한 向上으로 향시 새로운 情報를 접하게 되는 情報化時代에 살고 있다. 이러한 情報들중에 技術과 企業經營內面에 숨겨진 祕密을 노출 시키지 않기 위해 保護받으려고 營業祕密을 知的財產權의 범주에 담아 立法化하는 경향이 주로 先進國에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財產權自本을 保護하는 것이 아니고 企業에서 祕密로 하고자 하는 對象을 定하여 法으로 保護하는 形態라고 할 수 있다.

營業祕密(Trade Secret)이란 美國制度에 의하면 現實의이거나 잠재적으로 獨立된 經濟的價值를 얻을 수 있는 情報로 “經濟性”이 있고 정보를 공개 또는 使用함으로써 經濟的利益을 얻을 수 있는 자들에게一般的으로 알려져 있지 않을뿐 아니라 정당한 수단에 의하여 쉽게 습득할 수 없는 “祕密性”이 있으며,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행하는 “保護의 價值性”이라고 定義하였다.

營業祕密은 學者들間에 다른 表現으로도 使用하는데, 이는 「企業祕密」, 「產業祕密」, 「財產權情報」, 「트레이드씨크릿」라는 말로 活用되고 있다.

(2)論議

營業祕密은 1961年 國際商工會議所(ICC)에서 노우하우 保護에 관한 決議를 채택한 이후 1970年 世界知的財產權機構(WIPO)에서 研究를 시작하였으며, 1988. 3~1988. 11 美國워싱턴에서 열린 先進國들의 會議에서 美國은 EC 및 日本에 대하여 营業祕密 保護法規의 制定을 要請한 바 있다. 그리고 現在 關稅 및 貿易에 關한 一般協定(GATT)의 우루과이라운드(UR) 協商에서 营業祕密 保護問題가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3)特性

營業祕密의 概念이나 對象이 各國마다 다르며 美國이나 日本 및 國際商工會議所의 定義를 대체적으로 정리해보면 技術的 노우하우보다 넓은 概念으로서 “技術上 혹은 工業上의 祕密”以外에 “營業上 또는 經營上의 祕密”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를 「技術的 노우하우와 經營的 노우하우」로 대별하기도 한다. 营業祕密은 祕密性을 갖는 事實狀態 그 自體의 保護를 要求하는 發想이며 营業祕密이 權利가 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問題가 있으나 權利가 없다는 주장이 많으며 公正한 競爭의 實現이란 機能을 달성한다는 관점에서 知的財產權法과 目的 및 機能이 같다고 할 수 있다.

2類型

(1) 一般的 保護區分

① 技術的 营業祕密

技術的情報라고도 하며 特許要件을 갖고 있거나 갖지 않은 모든 技術이 包含되는 概念인데 物件과 方法의 發明이라던지 합성수지의 배합비율을 과하는 方法, 機機의 設計方法 및 강도 계산의 운영방법, 컴퓨터소프트웨어等이다.

② 經營的 营業祕密

經營情報라고도 하며 經營上의 祕密을 말하는데 고객명부, 製品의 產業販賣計劃이나 方法, 價格設定情報, 事務室管理方法, 营業運用에 關한 情報 等이다.

③ 其他

其他區分으로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物件 및 書籍인 「有體型 营業祕密」과 經營방법, 雇客情報, 製造方法에 해당하는 「無體型營業祕密」로 區分되고 經營管理層이나 一般管理層 그리고 人事管理祕密인 「人的營業祕密」과 企業施設이나 主要書類와 見本品等의 祕密인 「物的營業祕密」또한 企業創出이나 資產, 設備投資, 豫算配分計劃等에 해당하는 「財務的營業祕密」로 區分한다.

(2) 法的 保護區分

① 民事的 보호

民事的 保護는 营業祕密의 侵害事件에 대하

여 피해자가 民事的手段을 利用하여 不當使用者에게 대항할 수 있는 救濟手段이다. 이는 契約當事者에 대한 保護와 社員 및 從業員에 대한 保護 그리고 第3者에 대한 保護 等을 들 수 있으며, 民事訴訟에 의한 損害賠償請求가 주로 이루어진다. (채택국가 : 프랑스, 서독 等)

② 刑事的 保護

刑事的 保護는 营業祕密의 侵害事件에 대하여 피해자가 刑事的手段을 利用하여 解決하는 救濟手段이다. 이는 契約當事者 및 任員과 從業員이 祕密을 不正使用하거나 부정누설하는 경우 또는 도용자와 부정누설을 받은 第3者 그리고 절도의 경우 등이며 刑事告訴로서 處罰하는 保護手段이다.

(채택국가 :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③ 別途法의 保護

不正競爭防止法(서독, 일본, 스위스, 호주, 노르웨이)과 判例法(영국과 미국의 일부 주) 또는 企業祕密法에 特別法(美國)으로 各國家마다 特性에 따라 保護하고 있다.

3. 外國의 制度

(1) 美國

미국에서는 각주에 있어서 19세부터 common law상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영업비밀(Trade Secret)의 보호가 인정되어 왔다. 1979년에 이르러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 통일 영업비밀보호법(Uniform Trade Secret Act)을 모델법으로 제정하여 최근까지 약 30개주에서 이 모델법을 다소의 수정을 가하여 채택하고 있다. 통일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의 정의에는 다음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첫째, 제법, 양식, 集成, 프로그램, 고안, 방법, 기술 또는 プロセス 등의 정보일 것.

둘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정당한 수단으로써 용이하게 획득할 수 없는 것으로서 현실적 또는 잠재적으로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일 것.

셋째, 당해 상황하에서 비밀성 유지를 위한

합리적 노력에 대상이 되어 있을 것.

즉, 영업비밀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비밀성, 신규성 및 경제적 가치 등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열거되고 있다.

첫째, 당해 영업비밀의 부정한 수단(절도, 매수, 부실표시, 비밀유지 의무위반, 비밀유지무위반의 교사, 전자적 수단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한 스파이 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자 또는 알 이유가 있는 자가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둘째, 당해 영업비밀이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자 또는 알 이유가 있는 자가 타인의 영업비밀을 개시 또는 사용하는 행위, 위와 같은 절도, 매수, 비밀유지의무위반 등의 부정수단에 의하여 취득된 영업비밀에 대하여 그 점을 알면서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를 취득된 영업비밀에 대하여 그 점을 알면서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를 취득, 개시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이를 침해행위로 인정하고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침해행위 정지 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침해 행위 그 자체가 절도죄 또는 장물이 송죄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2) 英國

영국에서는 19세기 초기부터 계약법, 불법행위법, 신뢰위반 등의 법원칙에 근거한 판례를 통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여 왔다.

판례상 영업비밀을 인정하는 기준은 대체로 당해 정보가 비밀일 것, 즉, 공개된 것이 아닐 것 및 당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정보의 보유자가 손해를 입거나 경쟁자가 이익을 얻을 것 등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판례상 침해행위의 유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인정되고 있다. 첫째, 이사와 회사, 사용자와 피용자, 대리인과 본인 등의 신뢰관계가 인정되는 당사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여 당해 정보를 공개 또는 사용하는 행위, 둘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그러한 의무

위반사실을 알면서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당해 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공개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西獨

서독에서는 1909년에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법과 민법 중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판례상 영업비밀의 정의는 대체로 사업활동에 관한 것일 것, 한정된 자에게만 알려져 있고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않을 것, 비밀유지의사가 분명할 것,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데에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로서 형사처벌이 인정되는 것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되고 있다.

첫째, 종업원 등이 고용관계에 의하여 취득한 영업비밀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개하는 행위

둘째, 기술적인 수단의 사용, 비밀의 화체된 복제물의 작성이나 탈취 등에 의하여 권한없이 영업비밀을 입수하는 행위

셋째, 자기 또는 타인이 위 첫째 또는 둘째 항목에 열거된 행위에 의하여 지득한 영업비밀을 권한없이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위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는 금지청구권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고, 침해행위 자체가 형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4)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으며, 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침해행위가 형벌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5) 日本

일본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보

호하고 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을 요건을 첫째,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을 것, 생산방법, 판매방법 등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영업상의 정보일것 및 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유형들을 열거하고 있다.

첫째, 절취, 사기, 강박 등의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및 그러한 영업비밀을 사용, 開示 하는 행위

둘째, 영업비밀의 보유자로부터 開示 된 영업비밀을 不正競業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 開示하는 행위

셋째, 위 첫째, 또는 둘째 항목에 열거한 행위가 개재되어 있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러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開示 하는 행위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위와 같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손상된 우려가 있는

경우 정지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위 둘째 및 셋째 유형의 경우에 선의, 무과실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선의취득자가 당해 거래에 의하여 인정된 법위내에서 당해 영업비밀을 사용, 개시하는 행위는 정지청구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침해행위에 의하여 생긴 물건 또는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폐기 등 침해행위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손상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업상의 신용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

영업비밀 보유자의 침해자에 대한 정지청구권은 보유자가 침해사실 또는 침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침해행위가 10년간 계속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계속〉

안

발명특허품 실시알선 신청

내

본회는 생활용품에서 산업기술에 이르기까지 실용화되지 않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을 발굴, 본지를 통하여 관련기업 및 단체에 널리 소개함으로써 우수발명의 기업화를 촉진시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케 하고자 “발명특허품 실시 알선”사업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발명특허품의 실시알선(권리양도, 합작투자, 실시권허여 등)을 원하시는 발명가께서는 소정 양식에 의거 본회에 신청하시면 귀하의 권리내용 및 희망사항을 소개하여 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 음◎

1. 신청대상 : 특허, 실용신안, 의장으로 등록된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발명
2. 신청방법 : 소정 양식에 의거 수시로 접수
3. 계재료 : 무료
4. 접수(문의)처 : 한국발명특허협회 별명장려관(135-73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종합전시장 별관 2층 전화 : 551-5571~2